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10. 12.(목) 09: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제3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36-215~22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10개 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경찰청 통보 및 이용자 민원접수에 따라서 (주)로드피아 등 총 10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통보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현장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KISA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 접수는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접수하고 그동안 법안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10개 사업자에 대한 일반현황 및 다음 쪽 피심인별 개인정보 유출 경로 및 유출 건수, 유출 항목 등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드피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지연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관련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아이에스 동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관련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미실시 등 3개 항목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주경야독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속기록 관련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고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지 않아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고, 보호조치 중 암호화 관련 이용자 비밀번호의 평문 저장, 개인정보 송수신 시 보안서버 미설치 등 2개 항목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위메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지연으로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조치를 하지 않아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지식과미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관련 취약점 점검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고, 암호화 관련 직원 개인용 PC에 이용자 개인정보(7,611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암호화 관련 1개 항목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아이옥션/(주)코베이/(주)헤럴드아트데이 이상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제이엔씨마케팅은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아이엠비씨는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법 제29조제2항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의견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이엠비씨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과의 계약 및 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할 필요성과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 동안 '문화캐시'를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에서 발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규정 안내서'에 따른 조치이므로 이를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검토의견은 (주)아이엠비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개정시행에 따라 '15년 8월 18일부터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여야 하나 (주)아이엠비씨는 '16년 10월 13일 이전에는 이용자의 거래기록 및 문화캐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DB에 보관하였으며, 이 중에는 전자상거래법 및 상법 등 법령에 의한 보관의무가 없는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기타 9개 사업자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붙임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드피아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주)로드피아 등 10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74조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주)제이엔씨마케팅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600만원을 적용하고 피심인이 사업규모가 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기준금액 50%를 감경하여 과태료 총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과 관련하여 (주)로드피아, (주)위메프 2개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7개월 이상 지연신고하고, 이용자 통지를 해태한 (주)로드피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로드피아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 (주)위메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하여 (주)로드피아

등 8개 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병과부과가 가능하나 (주)위메프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신속히 시정하고 위반 규모가 24건에 불과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용자 피해보상도 약 13만원 상당 실시한 점을 감안하고 기타 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내역 확인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2차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주)로드피아 등 8개 사업자는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가중입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위반이 2개 이상인 (주)로드피아, (주)아이에스동서, (주)주경야독, (주)지식과미래 이상 4개사는 위반행위가 과다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 과태료의 감경사유입니다. (주)아이옥션, (주)코베이, (주)헤럴드아트데이 3개사는 처리지침 제8조에 의한 감경사유 중 사업규모가 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주경야독의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조사가 곤란했던 점을 감안하여 감경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입니다. (주)로드피아·(주)아이에스동서·(주)주경야독·(주)지식과미래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 (주)주경야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 (주)아이옥션·(주)코베이·(주)헤럴드아트데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과 관련하여 (주)아이엠비씨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억 2,300만원의 과태료 총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이행점검을 하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이에스동서의 작년 매출이 1조 5,000만원입니다. 종업원 수도 1,000명이 넘고, (주)위메프도 1,000명이 넘고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 개편 과정의 과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또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주)아이에스동서 같은 경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매출인데 6,0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스팸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건수나 유출항목, 다시 말해서 지금 정확한 피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소규모 영세업자이기는 하지만 (주)지식과미래는 7,000건이 넘는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로드피아는 해커 검거 이후에 신고를 했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의 보안의식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게 해 준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주)아이에스동서는 아까 말했지만 큰 기업이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 홈페이지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 (주)위메프도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인데 홈페이지가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과태료만 매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점검에 나서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시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방통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사업자 대상 교육과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직접 사업주들과 간담회도 사업자 교육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 보안투자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빨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피해가 미상이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피해 유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과 제이앤씨마케팅 같은 경우 온라인 광고마케팅 회사인데 종업원 수가 2명입니다. 이런 사업주들과 함께 과태료만 매겨서 별 차별이 안 되게끔, 이러면 무슨 경고가 되겠고 시장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에스동서 같은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만 주로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사업주이고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는 사업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위반을 저희가 적발하고 난 뒤에는 그 개선사항을 다 시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이 탈취가 돼서 일단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전체 이용자가 최대로 보면 10,000명 정도인데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난 뒤에 업체에서 즉시 '이것을 조심하시라.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이것은 해커가 보낸 문자다'라고 안내를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사실이 있으면 또 다시 피해 접수받는 그런 절차들은 진행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들은 현재 업체나 위원회 쪽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갈수록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우후죽순 지금도 마구 생겨날 텐데

우리가 시장에 이런 엄중한 경고가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피해규모를 짐작조차 못하니까 이렇게 과태료 처분 밖에 못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시장에 경고를 보내서 보안의식을 철저히 갖추도록, 또 시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와 제재 안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안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무처에서 이 안건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아이엠비씨 관련된 내용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견을 보면 (주)아이엠비씨가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시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 사무처의 불수용 의견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법리나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 법이나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주)아이엠비씨 쪽에서 개인정보 분리·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아이엠비씨 쪽 관계자들, 또 경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보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여타 정보를 섞어서 같이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상의 편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 관리하고 마케팅 하는 데 편리하겠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유효기간제가 2015년 8월에 처음 시행됐을 때 도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그 제도 자체를 방기한 것 아닌가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대강 같이 섞어서 보관해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안일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생각이든 아니면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단히 낮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정착이 되고, 또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는 인식,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빅데이터 관련 활용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촬영물 유통 등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보호 이슈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잘해 왔는데 지금 변화된 환경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제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준비

하고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하고 또 외부에 발표를 할 텐데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정책기조나 또 이용자보호 정책들은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에 관련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 6개월 이상 현장조사를 하셨는데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반사실과 관련해서 조금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메프 같은 경우에 피심인 측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42페이지 가운데 416건은 은행 이름과 계좌만 노출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데 사무처에서 지적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름과 은행명, 계좌가 모두 노출된 24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으로 본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또한 (주)아이엠비씨 경우입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피심인 측은 전자상거래법과 상법에 따라서 5년간 '문화 캐시'를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결국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무처에서 지적한 부분은 다른 법령상 개인정보의 보관 의미가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원DB나 거래DB를 분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해서 별도의 저장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내용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결과적으로 보면 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개인정보 파기에 관련된 것이 위반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리가 안 돼서 2015년 8월~2016년 9월까지 1년여간 약 200만명에게 광고메일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2가지 사안이었는데 이 안건을 사무처의 위반 적시내용과 피심인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정조치(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원수가 2명 혹은 6명 등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계속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런 위반사업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이런 제재가 없으면 절대 근절 안 됩니다. 사업자들이 소홀하게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방안으로 위원회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되, 결국은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굉장한 사업수익을 올리면서 조그마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지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 고강도의 처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병과를 할 수 있으면 비록 액수가 적지만 과징금도 병과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6페이지를 보시면 안내서 있지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캐쉬백, 포인트, 마일리지 남아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만큼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따로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멸시효만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동일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망법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미이용하면 분리·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가 2년, 3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간이 있으면 신청한 기간이 경과 되면 파기하거나 분리·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있으면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캐쉬백, 포인트,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계속 1년 동안 접속하지 않았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이용자들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쪽에 제 포인트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통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가 사업자 측에 계속 그대로 남아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할 때 자기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아 있다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1년 동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통보할 때 포인트가 있거나 마일리지 남아 있다면 그런 내역까지 통보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 접속은 계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물론 추가적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필요성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가 아주 아주 중요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벌백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 교육도 하고, 특히 엄격한 일벌백계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처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많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어야 우리가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개인정보의 산업화 활용도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개인정보 자체 보호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비식별 처리를 통한 산업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11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의제되어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심사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3월 15일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국민, 하나 등 7개 신용카드사 및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등 시범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금년 9월 14일~29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시범서비스 평가 결과를 각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안내를 하였으며, 10월 18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평가를 완료한 현대카드(주), 비씨카드(주), 롯데카드(주), 신한카드(주), 삼성카드(주), (주)케이비국민카드, 하나카드(주) 등 7개 신용카드사입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설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먼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심사항목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방지, 접속정보의 위·변조 방지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개 세부심사 기준 내 75개 세부평가 기준을 평가합니다.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은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요건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을 8인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심사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자별로 법률, 기술, 회계 분야 등 7인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서면 확인 심사를 하고 현장실시를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자당 약 5일씩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4개 심사항목, 17개 세부심사 기준, 세부평가 기준 92개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항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1>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심사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은 10월 19일~20일까지 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실사는 10월 23일~12월 8일까지 7주간 각 사업자별로 약 5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2월 3주쯤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까지는 11개 본인확인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 기관이 3개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하는 기관이 3개 있고, 공인인증서 기관 5개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시범서비스를 평가해 보니까 7개 카드사는 본인확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 심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면 시범서비스 중에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이나 보안, 기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평가기준 11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적

합이 8건,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보완 필요 2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완 필요사항을 보니까 7개 신용카드사가 1개 인증대행사를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대행기관을 하나 세운다는데 만약 거기의 전산이 마비가 되면 일거에 다 모든 전산이 작동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보완 방안은 카드사마다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수의 인증대행사를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이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신청서는 오늘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 11일에 저희가 시범서비스 결과 통보를 내 보냈고 어제부터 신청서 접수기간입니다. 18일까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신청서에 우리가 보완 지시를 한 것처럼 카드사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개의 대행사를 더 세워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하는데 심사에서 누락시키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완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시까지 다 개선하라고 나간 상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신청서에 포함되겠네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신용카드 명의 도용 문제인데 절취를 한다거나 또는 도난 내지는 분실을 해서 습득한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라고 위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인증을 시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보완 방안을 보니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완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SMS 같은 것으로 인증내역을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이나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실시시간으로 인증내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시간으로 인증이 일어났을 때 인지할 수 있어야지 혹시라도 명의도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최소화'라고 썼는데 우리가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담 상담원에게 전화접속이 돼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전화상담은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부 ARS로 돼서 '몇 번을 누르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직접 전화를 0번을 누르세요. 상담원과 직접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통화중이거나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상담원을 최소화하라는 방안이 어떤 방안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본인확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상담원 수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확인하고자 하는 DB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권한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콜센터를 운영한다면 콜센터 상담원이 100명이면 그중에서 본인확인 업무를 하는 직원을 몇 명 정해서 그 사람들만 DB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용어를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본인확인 전담상담원을 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배정하라는 취지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상담원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가뜰이나 전화접속으로 해서 상담원 연결이 쉽지 않은데 상담원 수를 줄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본인확인 정보 DB에 접근하는 인원은 명확하게 정하고 최소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편의성을 생각할 때는 본인인증기관이 많을수록 또 쉽게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서를 받는데 일주일간 받으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18일까지 받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것을 잘 꼼꼼히 따져서 신청서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신청접수 하고 서류접수 그다음에 현장실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속적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냈던 회사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한국NFC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까지 나올 정도로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을 해 주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회사입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스템 개발 중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계속 언론 등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NFC는 신용카드 NFC 방식으로 본인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인확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회원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처럼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NFC는 그런 회원을 가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처음에 신청은 한국 NFC가 들어왔지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선정과정에서 사업수행자를 변경해서 한국스마트카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들어와서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NFC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모델은 이 기술을 다른 카드회사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연결할 수 있는 카드사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프로세스 확정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

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준비상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직 시범서비스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범서비스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2011년에 신용평가사 3개사를, 2012년에 이통 3사와 공인인증기관 5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5년만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7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범서비스 결과가 다 점검이 돼서 이 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시범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신용카드를 통해서 개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편리한 수단의 하나겠지만 이것은 다른 전화번호나 아이핀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달리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더 철저하게 심사항목에 반영되도록 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내일이 국정감사인데 전체적으로 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제4기 방통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진에게 방통위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이외에는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보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방통위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제 듣기로는 방문진에서 4시간 동안의 격론을 거쳐서 이사회 의결로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이사회 의결이 됐으니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올 텐데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미흡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 대한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무리가 따라는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시고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방문진으로부터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전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방송문화진흥 이사회 의결사항의 주문은 방문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수 측, 즉 舊 여권 이사들 중 일부가 관리감독관청의 자료제출마저 요구를 거부할 경우는 큰 문제가 되니 선택적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하자고 했는데, 뒤에 붙었던 것이 일상적인 수준의 자료는 제출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업무 검사·감독권을 발동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본질입니다. 저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舊 여권 이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진의 업무 검사·감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파업 중인 MBC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방문진 운영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MBC의 직원 해고나 불법·부당한 인사조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이 감독관청으로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 방문진의 책임,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한만 누리겠다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수법인으로서 그리고 MBC 최다주주로서 과연 방문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의 의결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쪽 입장이 공식 공문으로 접수가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저는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식으로 방통위가 문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단호한 입장을 가지되 일단 문서가 접수된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폐회】